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019. 4. 1 조례 제857호〕

일부개정 2022. 10. 28 조례 제10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 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⑤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등) ①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기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0. 28〉

② 삭제〈2022. 10. 28〉

③ 주차장 유료 운영 종료 2시간 전부터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2. 10. 28〉

1. 공무수행 중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5. 민원인 차량으로 별표 2의 민원방문 확인증에 별표 3의 민원방문 확인도장을 받은 경우(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2시간 초과 시 매10분 마다 300원씩 가산)
6.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할 목적으로 방문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무료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7. 삭제 〈2022. 10. 28〉
8. 본청 실과별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등록한 차량
9. 본청 직원 중 부상·임신 등의 사유로 차량 없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직원의 차량
10. 문서수발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외청·직속기관·사업소 직원의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거나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 감경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8〉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경형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요금 면제

7의2. “아이사랑보너스카드”소지자 또는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가 소유한 차량으로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제시하는 경우

7의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으로 증명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하는 경우

8.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어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5조(관리인의 지정) 군수는 부설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부설주차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방치차량의 조치) ①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에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할 수 있다.

② 차량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보관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및 견인료, 보관료 등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8〉

제7조(안내표지판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민원인 등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2.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 이용자의 준수사항
4.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5. 손해배상책임 등 그 밖에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
2. 주차와 관련된 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4. 차량 안에 귀중품 보관 금지
5. 차량의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할 것
6. 그 밖에 부설주차장 이용·관리에 필요하여 군수가 정하여 사전에 알린 사항

제9조(주차의 제한 및 이동)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량을 부설주차장 외부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차량 구조상 부설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2.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

3. 이용자 또는 그 일행이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4. 이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훈련 등의 사유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부설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0. 28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 10. 28〉

주차요금

최초 30분 이하	30분 초과부터 40분이하	40분 초과 시부터 매 10분 마다
무료	1,000원	300원 ※ 10분 미만은 10분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22. 10. 28〉

민원방문 확인증 (2시간 이내 무료)	
주차일시	년 월 일(: ~ :)
방문부서	
방문목적	
확 인	담당직원: (서명 또는 인)

※ 비고: 부설주차장 운영 사정에 따라 달리 기재할 수 있음.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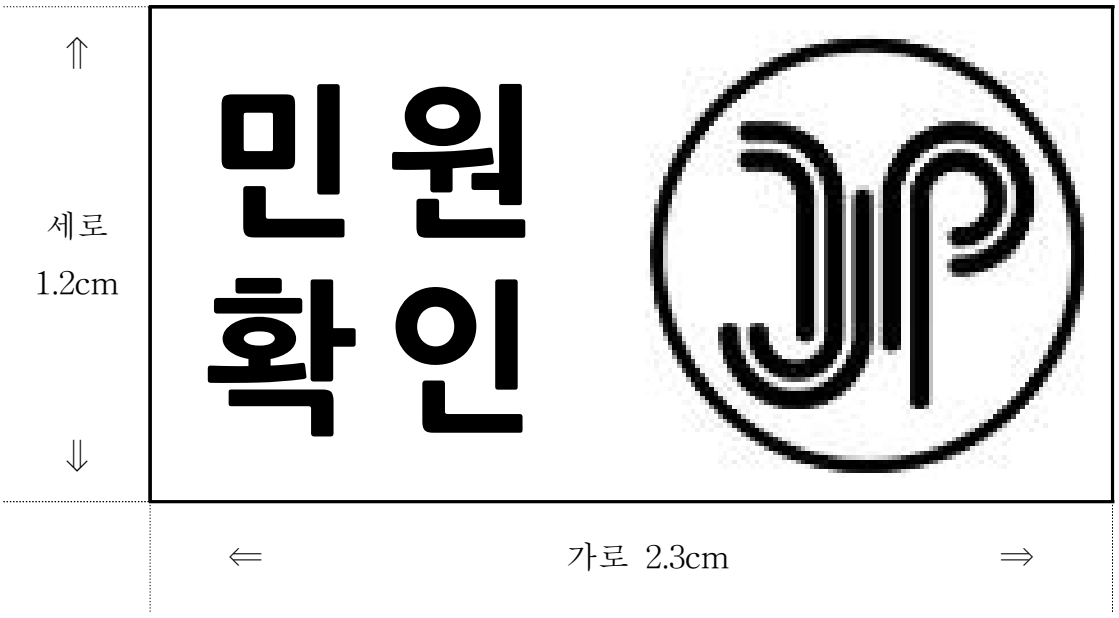
민원방문 확인도장